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2013)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번호 2018-51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 (미국) (ELLIOTT ASSOCIATES, L.P. (U.S.A.))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절차 명령 제 11 호

중재판정부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Mr. Oscar M. Garibaldi

Mr. J. Christopher Thomas QC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20년 2월 21일

I. 재판 경과

1. 2019년 10월 11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수정 절차시간표를 승인하는 절차 명령 제9호를 발령하였다.
2. 2020년 2월 21일자 이메일을 통해, 피청구국은 당사자들이 문서제출 및 당사자들의 서면제출의 기한을 변동하기로 합의하여, 자발적 및 비자발적 문서제출 기한을 2020년 3월 6일로 연장하고; 청구인의 재주장서면 제출 기한을 2020년 6월 16일로; 피청구국의 재반박서면을 2020년 9월 18일로;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재반박서면 제출 기한을 2020년 11월 12일로 연장하였다고 중재판정부에 통지하였다.
3. 동 이메일에 피청구국은,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재반박서면의 타당성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으며, 적절할 때에 이 사안을 제기하겠다고 명시하였다.

II. 중재판정부의 결정

4. 상기를 고려하여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결정한다:
 - (a)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수정 절차 시간표를 승인한다; 또한
 - (b)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재반박서면이 타당한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적절한 때에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조건 하에, 재판은 현 절차 명령의 부속서에 재 명시된 수정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다.

중재지: 영국 런던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

부속서

1단계: 제1차 서면제출		
수정 청구서면	청구인	2019년 4월 4일
반박서면 (및 모든 본안 전 이의제기)	피청구국	2019년 9월 27일
2단계: 문서제출 및 비분쟁 당사자의 서면제출		
문서제출 요청	당사자들	2019년 11월 1일
문서제출 관련 이의제기	당사자들	2019년 11월 22일
이의제기 관련 답변 (중재판정부에 제출)	당사자들	2019년 12월 13일
비분쟁 당사자의 협정 제11.2(4)조에 따른 서면제출 의사 표시	미국	2020년 1월 6일
이의제기 관련 중재판정부의 결정	중재판정부	2020년 1월 10일
비분쟁 당사자의 협정 제11.2(4)조에 따른 서면제출	미국	2020년 2월 7일
자발적 문서제출 및 비자발적 문서제출	당사자들	2020년 3월 6일
3단계: 제2차 서면제출		
재주장서면 (및 해당하는 경우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답변서)	청구인	2020년 6월 19일
재반박서면 (및 해당하는 경우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재주장서면)	피청구국	2020년 9월 18일
(해당하는 경우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재반박서면)	(청구인)	(2020년 11월 12일)
4단계: 심리		
반대신문 대상 증인 및 전문가 통지	당사자들	2020년 11월 23일
심리전 회의	전원	2020년 12월 7일
심리	전원	2021년 1월 25일 및 2월 1일 주간